

세계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2016. 1. 19.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 주 의 ※

동 자료에 명시된 입국허가요건은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로 여행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여행 전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 공관 웹사이트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주 지 역	나우루*	사증필요 - 도착사증가능 - 왕복항공권 소지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3개월 이상	
	네팔	o 사전 취득 불필요 (공항에서 취득 가능) ※ 최대 연간 150일까지 연장 가능 (한 달 단위로 연장)	o 입국 후 24시간 이내 체류가능 o 통과여객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6개월 이상	o 네팔국제공항 비자비용 - 15일 복수비자 : \$25 - 30일 복수비자 : \$40 - 90일 복수비자 : \$100
	뉴질랜드	o 사증면제협정체결(90일) - 외교관·관용·일반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o 귀국항공권 및 재정 능력 확인 - 1달에 1,000불 정도의 재정능력 입증 요구, 현금, 카드, 여행자 수 표로 확인
	대만	o 무사증(90일) - 왕복항공권 소지 - 입국일 익일부터 기산	o 입국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음 o 입국할 경우 1) 왕복항공권 소지 2) 여권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6개월 이상	

*나우루 - 왕복티켓을 소지한 경우 도착 시 3~4개월까지의 비자 발급 가능.

단, 출발전 나우루 외교부 이민국 담당직원(e-mail : rod.henshaw@naurugov.nr/joanna.olsson@naurugov.nr)에게 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아야함. 끝.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주 지 역	동티모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관용(무기한) ○ 도착사증(관광,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딜리공항/딜리항구: 수수료 \$30 - 육상국경: 사전에 온라인(동티모르 이민국)으로 'Visa Application Authorization' 신청 후 소지하여야 하며, 입국시 이를 제출(수수료 \$30) <p>※ 동티모르 이민국 웹사이트 주소: http://migracao.gov.t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비자(Transit Visa, 최대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20 - 다음 목적지 티켓(return ticket) 또는 출국용 티켓 구매 자금 보유 입증 -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보유 입증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연장(일반)은 30일 미만 추가시 수수료 \$35, 30일이상 60일 미만 추가시 수수료 \$75 (최대 60일까지 추가 가능) ○ 도착사증 부여 이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 체류자는 목적에 맞게 별도의 장기사증 신청
	라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15일) ○ 외교관 · 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WOV 관련 별도 규정이 없으며, 무사증·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 이외의 모든 입국/경유자는 사증 필요 ○ 심야 시간중 공항이 폐쇄되어 공항내 체류 불가 	6개월 이상	
	마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사증(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복항공권 소지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1년 이상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주 지 역	마이크로 네시아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6개월 이상	
	마카오	무사증 90일 체류 가능 - 체류 가능 기간 내 귀국 항공권 소지 필요	목적 국가행 항공권	30일 + 체류기간	o 연간체류가능기간: 최장 120일
	말레이시아	o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용.일반 (관광목적 90일) * 영리 및 종교활동 등 비자 필요	o 출국 항공권 지참 o 출국일자에 따라 주재국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 발급	6개월 이상	o 무사증(관광비자) 입국자 중 인접국 2회 이상 반복 출입국자에 대해 체류 기간 제한 또는 입국 거부 하고 있음.
	몰디브	o 도착사증(관광, 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 체류예정호텔 예약확인증 소지 필요 o 도착사증(상용, 30일 최대) - 초청장 소지 및 초청자가 몰디브 이민국에 사전 통보한 경우 가능	o 목적지가 확정된 항공권 소지 o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 - 수수료 없음	체류예정기간 이상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주 지 역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여권: 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해 무사증(30일) ○ 외교·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운영시간 중에만 출국장내 환승대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1년 이상 ○ 일시방문: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비자 수수료 (110,000 투그릭)
	미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 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90일) ○ 일반 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 ○ 도착 사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Visa 시스템 도입하여 관광 목적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도착사증 발급 확대(http://evisa.moip.gov.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 책임 하에 공항내 체류 가능 ○ 출국 항공편 결항 등의 이유로 임시 입국 필요시 transit visa 발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체류 	6개월 이상	
	바누아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1년내 120일) 		4개월 이상	
	방글라데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여권 : 사증필요 2. 외교, 관용 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90일) 3. 도착사증(제한적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 50/ 30일 - 관광, 투자, 상용 등 (초청장, 상용방문 등 관련 서류 소지 필요) - 원칙적으로 최초 방문시에만 허용. 이후 방문시에는 주재국 재량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승구역 없음, 단 네팔 등 인근 국가 방문시 기내에서 단시간 대기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착사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국내에서 사증발급 신청

- *미얀마 - 사증 종류별 수수료 및 체류 기간: 입국사증(U\$40/28일), 비즈니스사증(U\$50/70일), 경유사증(U\$20/24시간), e-Visa(U\$50/28일)
- 불법체류시 과태료: 90일까지는 매일 U\$3, 90일 이후부터는 매일 U\$5 부과
 - 국경을 통한 입국은 금지, 항공편 입국 필요
 - 미얀마 이민부 홈페이지: www.myanmarvisaonline.com
 - e-Visa 홈페이지(<http://evisa.moip.gov.mm>) 상에서 사증을 신청하고, 신청 내역서를 출력 후 지참하여 입국하여 양곤공항 도착사증 발급 창구에 여권과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면 도착사증 발급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주 지 역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15일) - 단,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필요 ○ 외교·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90일) ○ 사증 필요시(15일 이상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내 초청·보증 개인/기관/단체가 직접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에 신청 → 5일내 신청인 및 주한대사관에 결과 통보 → 사증 발급대상자가 주한대사관에 방문/비자 발급 - 단순 여행객의 경우 베트남내 여행사를 통해 도착 비자 신청 가능(3일 소요, 여권 사본 및 도착 일자/편명 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티켓 소지, 최종 도착국가 사증 소지, 24시간 이내 출국 ○ 환승구역 내 체류 	6개월 이상	○ 훼손 여권은 입국 거부

*베트남 - 2회 연속으로 일방적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직전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30일 경과후에야 다시 무사증 입국 가능

※ 직전 베트남 방문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하였으나 베트남 출국후 별도 사증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라도 입국 가능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주 지 역	부탄*	1. 일반여권 - 부탄 지정여행사(tour operator)를 통해 사증발급 신청 ※ 지정여행사 리스트는 부탄 관광청 홈페이지(www.tourism.gov.bt)에 있음 2. 외교, 관용 여권 - 초청한 부탄 정부기관(counterpart agency)을 통해 부탄 외교부에 사증 발급 신청 서류 제출	○부탄 PARO 국제공항은 공항내에 환승서비스 기능이 없어 환승불가	6개월 이상	○부탄대사관에 직접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아님
	브루나이	○무사증(30일)	○최종목적지가 표기된 확정티켓 소지 ○환승구역내 체류 후 제3국 출국	6개월 이상	
	사모아	○무사증(60일)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환승구역내 체류후 제3국으로 출국	6개월이상	
	솔로몬군도	○무사증(1년내 90일)		6개월 이상	

*부탄 - 원칙적으로 부탄 정부지정 여행사 등을 통해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부탄 외교부로부터 받은 비자 승인서를 가지고 입국, 부탄 도착시에
입국사증 스탬프를 받음(수수료 \$20, 15일 체류)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주 지 역	스리랑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여권(단기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www.eta.gov.lk)을 통한 사전 발급 필요(수수료 \$30) - 도착사증 발급도 병행(수수료 \$35) - 단기방문 목적을 제외한 거주, 유학, 상용 목적인 경우 주한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한 사전 허가 필요 ○ 외교관·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 목적인 경우 주한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한 사전허가 대상(수수료 면제) - 공무목적의 도착사증은 공항에서 발급 불가, 단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의 경우 공무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단순 관광입국 목적(Entry) 도착사증 발급 가능(수수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지가 확정된 항공권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승구역 내 체류(8시간 이내) * 통과비자(Transit V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이내 수수료 : 없음 - 3일 이상 7일 이내 : 수수료 부과(\$25) (스리랑카내 체류지(호텔예약증) 소지) 	6개월 이상	○ 단기방문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체류목적에 따라 최대 6개월)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관용·일반(90일) 		6개월 이상	무사증(관광비자) 입국자 중 인접국 반복출입 또는 장기체류 후 인접국 출국 후 재입국 시 입국거부 (케이스에 따라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음)
	아프가니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07.8월 이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여권사용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에 한해 사증 신청 가능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ETA)사증(3개월이내 단기 방문자, 유효기간 1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편으로 호주 도착 후 8시간 이내에 항공편으로 제3국으로 출국 ○ 확정된 항공권과 차항지에서 필요한 입국서류 소지해야함 ○ 환승구역내 체류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호주 - 3개월 이내 단기 방문자는 항공권 예매시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자사증을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 가능 (유효기간: 1년). ETA가 승인되지 않고 "Refer Applicant to Australian Embassy"라는 메시지가 하단에 나타나거나, ETA가 12시간이내에 승인되지 않을시, 여권의 인적사항면 사본과 연락처를 첨부하여 주한호주대사관 이메일(seoul-visa@dfat.gov.au) 또는 팩스 (02-720-9932)로 문의해야함.

- 전자(ETA 601)사증 수수료(호주불): \$ 20, 방문비자(600, 1년까지 가능) \$ 130, 워킹홀리데이비자(417) \$ 420, 사업비자(457) \$ 1035, 고용주지명 임시취업(401) \$ 360, 학생비자 \$ 535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주 지 역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사전발급 필요(지문제출 요구) ○ 외교관·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90일) ○ 온라인 관광사증(E-Tourist V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일을 포함 30일 체류 가능 - 관광, 휴양, 친구 및 친인척 방문, 단기치료, 단기 비즈니스 상담 목적의 입국 - 아래 온라인주소를 방문하여 신청 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tvoa.html - 연 2회로 제한 - 인도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4일 전에 신청하여야 함 * 기간연장 및 비자종류 변경 불가 - 아흐메다바드·암리짜르·벵갈루루·첸나이·코친·델리·가야·고아·하이데라바드·자이푸르·콜카타·력나우·뭄바이·티루치라팔리·트리반드룸·바라나시 공항(총16개)을 통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가능 - 입국시 온라인신청 완료 증빙 문서 [Indian e-Tourist Visa(eTV)] 출력하여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하며, 도착공항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티켓 및 차항지 필요 서류 ○ 공항내 환승구역에서 체류 후 출국 	6개월 이상	

	<p>10지문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귀국(또는 제3국 출국)항공권 및 충분한 체류비용 소지 요구(현금 또는 현금+크레디트 카드 등) - 수수료: 미화 48~60불(은행간 수수료 제외)을 온라인 신청시 Credit 카드로 납부 			
인도네시아	<p>○ 일반여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30일) ※ 관광 목적 한정(체류 연장 불가) / 비즈니스문화가족방문, 30일 초과 체류시에는 사증 필요(도착사증 발급시 수수료 미화 35불) <p>○ 외교관·관용여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 14일 입국 허용, 다만 연장은 불허됨 ※ 14일 이상 체류예정일 경우에는 외교관·관용여권이더라도 도착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p>○ 6시간 이내 제3국 출국항공권 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환승구역 내 대기 	<p>6개월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여권뿐만 아니라 외교관·관용여권도 해당 - 다만, 거주자는 재입국 허가기간 내 입국할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에 미만이더라도 입국 가능 	<p>○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출입국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5개소) : Soekarno-Hatta(자카르타), Ngurah Rai(발리), Kuala Mu(메단), Juanda(수라바야), Hang Nadim(바탐) - 항만(9개소) : Sri Bintan(Tanjung Pinang), Sekupang(바탐), Batam Center(바탐), Nongsa Terminal Bahari(바탐), Nongsa Terminal Bahari(바탐), Marina Teluk Senimba(바탐), Citra Tri Tunas(바탐), Bandar Seri Udana Lobam(Tanjung Uban), Tanjung Balai Karimun(Tanjung Karimun)
일본	<p>○ 일반여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일 이하 관광, 방문 등 목적 : 사증면제 - 90일 초과 체류 또는 취재, 흥행, 수익활동 목적 : 사증 필요 <p>○ 외교관·관용여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공무수행기간) 	<p>한국인은 통과사증 불필요</p>	<p>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무사증의 경우는 3개월)</p>	<p>○ 여행증명서로 입국 시 사전에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함 (단수여권은 무사증 입국 가능)</p>

--	--	--	--	--	--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주 지 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 ○ 외교·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승 티켓을 소지하고 경유하고자 하는 공항, 항구, 터미널 을 떠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72시간 무사증 체류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경, 상해, 광저우, 충칭, 청두, 선양, 다롄, 시안, 계림, 쿤밍, 항저우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유효한 여권과 제3국행 사증, 항공권 소지자 - 입국한 공항/도시로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국한 도시에만 체류가능(시안은 시안시와 셴양(咸陽)시를, 광저우는 광동성 전 지역 체류 가능)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사증은 사망자 가족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공항에서 도착 비자 발급 가능) ○ 외교·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90일) ※ 한국의 경우는 캄보디아 외교·관용여권소지자에게 60일 무사증 체류기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환승구역에 체류하거나 도착비자를 받아 시내 관광 가능 ○ 시엠립 공항에 도착하여 관광비자를 받고 공항 밖으로 나온 경우, 당일 시엠립 공항을 이용 출국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비자의 경우는 당일 출국 가능 ○ 캄보디아 비거주 경유자 대상 캄보디아 e-visa 웹사이트(www.evisa.gov.kh)를 통해 '경유비자(D)' 신청 가능(2015.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유비자(D)는 캄보디아 경유(3일 유효), 캄보디아 입국(3개월 유효) 	캄보디아에서 출국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사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30 - 상용: \$35
	북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별도 규정 없음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키리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30일)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6개월 이상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주 지 역	태국*	○ 사증면제협정 - 일반여권(90일) - 외교관·관용여권	여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간주될 수 있음	6개월 이상	○ 체류지 관할 태국 이민청 사무소 또는 공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음 (다만 공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을 경우 재입국허가 당일 출국하여야 함). ○ 선원수첩 불인정
	통가	○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환승구역내 체류후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투발루	○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6개월 이상	

* 태국 - 태국 입국 후 여권을 분실해 한국대사관에서 신규로 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받은 사람이 태국을 출국하려면, 사전에 체류지 관할 태국 이민청 사무소 또는 공항으로부터 신규 여권(여행증명서)에 태국 입국기록을 확인받아 두어야 함(공휴일에는 입국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 바람)

* 태국 입국 시 유의사항

○ 비자런 금지

- 단기 관광·방문 목적으로는 사증 없이 최대 90일간 태국 체류가 가능하나, 사증면제 제도를 남용해 장기체류 또는 취업 목적으로 출입국을 반복한 경우에는 입국심사 시 인터뷰가 실시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단기 관광·방문 목적의 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국심사관이 귀국 항공권과 숙박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음.
- 태국에 장기체류 또는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한 태국대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여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주 지 역	파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필요 - 도착사증 불가* ○ 외교관, 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3개월) 	○ 해당 없음.	6개월 이상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일시 중지 (2001.10.1)
	파푸아뉴기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도착사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관광 : (60일, 단수) - 단기상용 : (60일, 복수가능, 유효기간 1년) ※ 상용비자의 경우 초청장, 사업관계증명서 구비(입국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사전 비자 발급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체류비용과 귀국 및 제3국행 티켓 소지 ○ 상용입국을 증명하는 문서 (초청장 등) 	6개월 이상 (엄격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K100(\$40) ※ 다만 당지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발급받는 도착비자(관광비자)는 수수료 없음 ○ 단기 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수: K500(\$200) - 복수: K1000(\$400)
	팔라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복항공권 소지 	왕복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별도 제한 없음		

* 파키스탄 - 주재국 출입국당국 홈페이지(www.dgip.gov.pk) 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6개국에 대해 국내 상공회의소 추천장, 주재국내 무역관련 협회나 기관 초청장, 명예영사의 추천장 등을 소지하면 도착사증(30일)을 허가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착사증은 공식 방문에 한해 주재국 정부와 대사관과의 사전 협의 하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함.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주 지 역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용 목적: 무제한 - 외교·관용 목적 아닌 경우 : 30일까지 체류 가능 ○ 복수여권/단수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8.1부터 무사증(30일) - 제3국행 또는 귀국항공권 소지 필요 	제3국행 비행기 티켓 소지	제한없음 (입국시 유효한 여권)	※ 2015.7.15.부터 입국시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입국가능한 것으로 변경. 다만, 출국시는 유효한 여권 소지해야함
	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6개월 이상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 90일 체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 가능 기간 내 귀국 항공권 소지 필요 	목적 국가행 항공권	1개월 + 체류기간	

- *필리핀 - 체류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출발국가 필리핀공관에서 59일 체류비자를 받거나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매번 2개월씩 24개월까지 관광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함
- 관광비자로 언어연수나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언어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비자연장과 함께 이민청의 SSP(Special Study Permit)를 득해야 하며 취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는 노동부 및 이민청의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 만 15세 미만 아동이 부모 동반 없이 입국하는 경우(필리핀에 거주하고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 공항 도착시 이민국에 입국승인(입국금지면제, Waiver of Exclusion Ground(WEG))을 받아야 함.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음
 - 1) 공증된 진술서(부모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자녀를 필리핀 입국시 인솔하게 하였다는 동의서), 공증은 주한필리핀대사관, 일반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 영문으로 작성
 - 2) 아동 및 지정된 인솔자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
 - 3) 아동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 4) 입국승인 수수료(3,120 페소, 약 53페소/달러)
 - 5) 부모의 재정보증서
 -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분실·도난 또는 유효기간 도과 여권을 교체하기 위해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필리핀에 입국하는 경우, 긴급여권(최소 6개월 이상 유효) 및 출국항공권 소지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함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 (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미 주 지 역	가이아나*	○ 외교관·관용·일반(30일)		6개월 이상	○ 법령상 황열병 예방접종이 의무 사항이나 입국시 접종(9세이상 입국자, 입국 10일전 접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만일에 대비, 예방접종 권고
	과테말라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한국인의 경우 특이요건 없음	제한 없음 (다만, 가급적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을 권장하고 있음)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ESTA)를 승인받은 경우관광·상용 목적에 한하여 90일 이내 사증면제 ○ 사증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 관광목적,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 45일 이내의 여행자로서 왕복항공권소지, 체류기간 동안의 체재비 등 경제능력 입증 필요(체재비 등 체류사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 거부될 수 있음) ○ 상기 목적외의 경우 해당 목적에 맞는 사증취득 후 여행 필요	○ 6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유효한 여권 소지 ○ 확정된 출국항공권(도착지 국가) 소지	체류예정 기간	○ 사증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입국한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불가
	그레나다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여권(90일)			
	니카라과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6개월 이상	○ 니카라과 비영주권자는 입국시 관광세 \$10 납부 필요

* - 방문시에 황열병 예방접종 확인서가 필요하며 특히 밀림지역을 관광하려는 방문객은 필수적으로 황열병 예방접종 필요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미 주 지 역	도미니카(공)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특별한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 왕복항공권 요구 ○ 무사증입국의 경우 최초 입국시 30일간 무사증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추가 60일의 체류를 위해서는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함 ○ 30일 체류 기간 초과 시 2,500페소(\$56불 상당) 벌금부과
	도미니카(연)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특별한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 왕복항공권 요구
	멕시코	○ 사증면제협정(90일) - 외교관·관용·일반	특별한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 관광목적으로 입국시 180일 체류 부여 입국시 받은 용지 (FMM : Forma Migratoria Multiple) 분실하면 출국시 벌금332 페소(약 USD 24)부과 ○ 관광비자 1회 연장(90일) 가능
	미국	○ 관광·상용 목적에 한하여 사증 면제 - 단,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STA)를 승인받 아야 함 ○ 상기외 목적의 경우 적절한 사증 필요 ○ 90일 체류가능(VWP의 경우)	○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른 ‘전자 여행허가(ESTA)’ 로 통과 가능 하나, VWP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통과 사증 혹은 적절한 사증 소지 필요 - 아울러, 미국무부에서 승인된 여객선이나 항공편 이용 또는 비자면제 대상 국가의 항공편 이용 - 전자 여권 소지 (VWP로 통과하는 경우)	체류기간 (3-6개월 이상 권장)	○ VWP로 입국 후 다른 체 류자격으로의 변경 불가 ○ ESTA 신청서 허위작성, 입국목적 불분명 등의 경우 ESTA 신청 반려 또는 입국 거부 가능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미 주 지 역	바베이도스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여권(90일)			
	바하마	○ 사증면제협정(90일) - 외교관·관용·일반	○ 방문기간 종료시까지 유효하면 됨. (단, 바하마 체류후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로 출국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	6개월 이상	○ 왕복항공권 요구
	베네수엘라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30일) - 일반(90일)		6개월 이상	○ 법령상 황열병 예방접종이 의무사항이나 입국시 접종(1세 이상 입국자, 입국10일전 접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만일에 대비, 예방접종 권고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미 주 지 역	벨리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90일) ○ 외교관·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90일)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명예영사를 통해 사증 발급 가능 (02-719-5045)
	볼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수여권·일반여권: 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수여권 및 일반여권은 공항에서 도착비자(관광비자 30일)를 발급하나, 관광목적이 아닌 상용목적 등으로 입국할 경우 또는 상용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민청직원이 입국을 불허하는 사례도 있음 ※ 관광비자는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1회 연장시 체류기간 30일 부여, 연장시마다 소정의 수수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비자 연장의 경우에도 총 체류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착비자(관광) 제공시 수수료 Bs360(환율에 따라 약 USD51~USD53) ○ 여행자증명서: 입국 불가능 ○ 외교·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 동일 항공기를 이용 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환승 구역내 체류 ○ 8시간 이상 체류할 경우 입국 비자 필수 구입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시는 귀국 항공권 제시 요구 ○ 여권 종류에 무관하게, 황열병 (Yellow Fever) 예방접종증명서 미소지시 입국 불허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미 주 지 역	브라질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여권(90일)		체류예정 기간	○ 브라질인으로 부모동반 않는 18세 미만자의 경우 부모의 여행동의서가 필 요함. 외국인은 이에 해 당없으나 국경경찰의 요 구시 적절한 대처 요망.
	세인트루 시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여권(90일)			
	세인트빈 센트그레 나딘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여권(90일)			
	세인트 킷츠네비스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특별한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 왕복항공권 요구
	수리남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여권(120일)		6개월 이상	○ 법령상 황열병 예방접종이 의무사항이나 입국시 접종 (1세이상 입국자, 입국10 일전 접종)을 확인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만일에 대비, 예방접종 권고
	아르헨티나	○ 일반여권 - 무사증(90일) ○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 입국시 입국 스탬프 날인 필히 확인 요망, 입국 스탬프 누락자의 경우 출국시 밀입국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 ○ 여행자증명서는 아르헨티나 영주 권자에게만 출입국 허용함(여행객인 경우 출국만 허용)	6개월 이상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미 주 지 역	아이티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특별한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 왕복항공권 요구 ○ 공항이용료 : US\$55 (아이티 외교부 발급 외교관증 소지자 면제)
	앤티가바 부다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특별한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 왕복항공권 요구
	에콰도르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여권(업무수행기간) - 관용여권(90일) ○ 지정에 의한 사증면제 - 일반여권(관광목적의 무비자 입국시 90일)		6개월 이상	○ 90일 경과 후에 출국할 경우라도 과태료 없이 출국 가능 ○ 90일 경과 후에 출국한 경우 출국 후 최소 9개월이 지나야 무비자 입국 가능 (단, 9개월 전이라도 각국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비자 받으면 입국 가능)
	엘살바도르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90일)	○ 확정된 티켓, 여권 ○ 도착 후 48시간 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온두라스	○ 무사증 - 관광목적의 무비자 입국시 90일간 체류가능 ※ 중미 4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내에서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공항 이용료 : US\$39.24 (관용여권 소지시 \$2.5, 외교관 여권은 면제) ○ 중남미 및 아프리카 일부국가*에서 입국시, 황열병 백신 접종 의무 (온두라스 입국 10일전까지 접종이 필요하며, 1회 접종시 10년간 유효 / 접종 증명서 휴대필요)
	우루과이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입국 시(주로 육로 국경지역) 입국스탬프 날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출국 시 벌금을 부과함. 따라서 입국과정에서 스탬프 날인 필히 확인 요망	3개월 이상	○ 일반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90일)은 2013.1.10부터 발효

* - 공항이용료 : US\$38.17(단, 외교관 여권 소지자 면제, 관용여권 소지시 \$2.5)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이외 인근국으로 출입국함으로써 1회에 한해 30일간 체류 연장 가능

* 중남미(파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 아프리카(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감비아, 가나,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토고)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미 주 지 역	자메이카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특별한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 왕복항공권 요구 ○ 90일 무비자 입국시 1회 30일 이내 기간 연장 신청 가능(단 취업, 상업활동 불가)
	칠레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확정된 티켓 소지 ○ 공항 환승구역 내 체류 ○ 시간제한 없음	제한 없음	
	캐나다*	○ 무사증(6개월)	○ 특별한 조건 없음	체류예정기간+1일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eTA) 전면 도입 예정 (16.3.15~) - 비용(\$7(CAD)) (참고 : www.cic.gc.ca/english/helpcentre/questions-answers-by-topic.asp?st=16.7)

- *캐나다 - 입국목적(여행, 방문, 업무협의 등)을 명확히 신고(황설수설하는 경우, 사전승인 없는 유학/취업/사업 목적 및 동행자간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 거부당함)
- 체류장소 및 연락처를 정확히 숙지하여 신고, 현금 과다소지 자제
 -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여권 잔여유효기간은 체류예정기간+1일이나, 많은 항공사들이 승객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탑승TL 키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여권 잔여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권장
 - 18세 이하 미성년자 ① 혼자 여행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과 부모 또는 후견인 위임장 지참 ② 한쪽 부모와 여행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및 다른 부모 위임장 지참 ③ 부모 및 후견인 이외의 자와 동행시, 부모 또는 후견인의 허가서 지참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미 주 지 역	코스타리카*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여권(90일) - 선원수첩(90일)	○ 특별한 조건 없음 ○ 공항 밖으로 나갔다가 12시간 내에 들어올 경우 공항이용료 면제 - 출국장 이동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항이용료 면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6개월 이상	○ 공항이용료 : \$29
	콜롬비아	○ 사증면제협정 - 관광 및 경유 목적으로 입국시 90일에 한해 사증 면제	○ 통과 여객은 비자(특이조건) 없이 입국 가능(단, 환승구역 밖으로 나올 경우 출입국 당국의 승인 필요)	체류 예정기간	○ 콜롬비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여행자로서 콜롬비아 입국후 60일 이전에 출국시 공항세 면제
	쿠바	○ 외교관·관용·일반 - 사증 필요 - 주재 쿠바대사관에서 비자 즉시 발권 가능(30일, 30미불 상당) - 항공권 발권시 항공사로부터 비자 구입 가능(30미불 상당)	○ 특별한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 입국시 왕복항공권 및 체류지 정보 제공 필수 - 체류지는 호텔 또는 정부 허가 민박만 가능 ○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 출국시 공항세 25 CUC(약 USD29) 지불
	트리니다드 토바고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여권(90일)			

- *코스타리카 - 사증면제협정으로 사증은 불요하나 귀환 항공권 및 90일간 \$300 이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아래 국가(20개국)로부터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입국 최소 10일 전 접종) 증명서 소지 의무
 - 아프리카(13개국) : 앙골라, 베냉, 브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수단
 - 남미(6개국) :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쿠아도르, 콜롬비아(일부 섬지역 면제)
 - 카리브(1개국) : 구아나프랑스
 - 황열병 접종면제 조건 : 9개월 미만 유아, 달걀 알러지보유자, 기타면역계질환자, 흥선질환자 및 의사의 진단서상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황열병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된자 (60세이상, 임신, 모유수유, 황열병 백신 거부반응 가족력, 젤라틴 과민증 또는 에이즈질환 등)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미 주 지 역	파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여권(90일)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재국 대통령 구두 지시로 우호국(아국포함) 여행자에 대해 180일 까지 무사증 체류 인정 * 파나마 방문객은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 출발지에서 파나마행 항공기 탑승가능
	파라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여권(90일) ○ 무사증 - 일반여권(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비자(Transit Visa) 없음 ○ 최종 도착국가 사증 또는 항공권 소지 ○ 공항 환승구역내 대기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증명서는 입국시 불인정, 단 출국 및 경유는 가능(예외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는 입국 가능)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체류자 - 필요없음(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상기의 목적의 경우 적절한 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도장 날인하여 교부하는 출입국카드(Tarjeta Andina de Migracion)를 반드시 출국시 제출하여야 함. 분실시 이민청에 재발급 신청 ○ 입국스탬프 이첩제도 시행 - 여권기간이 만료 또는 분실 하여 신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이민청에 입국스탬프를 신여권으로 이첩해야 출국 가능 ○ 입·출국시 미화 \$10,000~30,000이하 현금 소지시 신고 ○ 입·출국시 미화 \$30,000 이상 반출입(현금) 금지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구 주 지 역	그리스	○사증면제협정(90일)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통과비자 불필요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는 입국심사시 불인정(출국은 가능)
	네덜란드	○무사증(90일)	확정된 항공권, 유효한 여권 ※ 체류비용이 충분한지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있음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노르웨이*	○사증면제협정(180일 중 90일)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 특이조건 없음	체류예정기간 또는 사증만료일+3개월 이상	○ 단, 아래사항 유의
	덴마크	○사증면제협정 (6개월 내 90일) - 단, 90일 이하라도 영리목적의 경우 체류허가를 받아야함.		사증만료일+3개월 이상	○ 양자협정 우선
	독일*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셴겐조약국으로부터의 최종출국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여권 잔 여유효기간을 요구. 다 만, 독일에 입국하지 않고 경유만하여 비셴 겐조약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 해, 여권 잔 여유효기간을 요구하 지 않음.	○ 셴겐조약국으로부터의 최종출국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이내에 셴겐조약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여야 입국이 허가됨.

*노르웨이 - 셴겐조약 당사국(영국, 아일랜드 등 일부 제외 대다수 유럽국가) 어디를 통해서든지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내에서 셴겐조약 모든 당사국 체류일자를 합산하여 총 90일 범위 내에서만 무사증 체류 가능

*독일 - 입국 체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거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현지 외국인관청에서 체류허가를 받을 경우 계속 체류 가능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구 주 지 역	라트비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확정된 항공권과 여권 소지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러시아	○외교관·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일반여권 - 사증면제협정(60일) ※ 180일 이내 총 90일 초과 불가 ※ 근로·거주·유학 목적의 경우 사증 필요	○제3국행 예약항공권 및 유효한 여권 소지시 도착한 공항(터미널)에서 24시간 이내 환승할 경우 사증 불요	○ 사증소지자 - 사증유효기간+6개월 이상 ○ 사증면제협정 대상 - 여권유효기간 내 체류 가능	○ 신여권 취득시 구여권 상에 있는 사증을 반드시 신여권으로 옮겨야 함
	루마니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6개월 이상 (다만, 장기체류를 위해 주재국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 비자 신청 일자로부터 6개월 이상)	
	룩셈부르크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6개월 이상	○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합산 무사증 체류가능 일수가 90일임.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구 주 지 역	리투아니아	○ 사증면제협정(90일)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 여권 서명란에 친필 서명 필요
	리히텐슈 타인	○ 사증면제협정(90일)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 국제공항 없음
	마케도니아	○ 무사증(1년중 누적 90일)	제한적 인정	6개월 이상	
	모나코	○ 무사증(90일)		체류예정기간	
	몬테네그로	○ 무사증(90일) - 외교관, 관용, 일반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 입출국시 유로 10,000 이상 신고 의무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구 주 지 역	몰도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여권 : 무사증 입국 - '14.1.3부터 6개월중 누적 90일 ○ 외교관 ·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체류예정기간	
	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확정된 항공권과 여권 소지	3개월 이상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 (여행계획, 귀국항공권 소지 여부 등 확인)

*몰도바 - 주중국 몰도바 대사관에서 한국 경임(한국에 몰도바 공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음), 중국 외 다른 나라에 소재한 몰도바 대사관에서도 사증 접수 및 취득 가능

1. 주중국 몰도바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100600 Beijing, Ta Yuan Diplomatic Office Bid. 2-9-1
- Tel. : +8610 653 25494
- 월~금 (9:00~18:00, 점심시간 : 12:00~14:00)

2. 사증 발급 구비서류

- 사증신청서(영어로 작성, 신청자 서명), 여권, 컬러사진 2장(3x4), 초청장(몰도바 이민국 확인, 여행시 몰도바 소재 여행사로부터 초청장 발급가능)
- 호텔 예약 증명서류(개인 초청시 초청자 주소가 기입된 신원보증서-공증 불필요), 항공권 예약 사본 등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팩스로 요청할 수 있음.

3. 사증 수수료

- 단수사증(1회 입국, 1달) - \$40
- 단수사증(2회 입국, 1달) - \$50
- 복수사증 : 1달 - \$70, 2달 - \$100, 3달 - \$120<transit visa fee(10시간 이내) : 1회 - \$20, 2회 - \$40>
- ※비자 수수료는 달러로 은행에 지불

4. 사증발급 소요기간

- 통상 3~5일, 급행비자 3일(비자 수수료의 50% 추가 지불해야 함)

5. 몰도바 내 체류연장(90일 이상)

- 몰도바 내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외국인 등록 카드 취득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구 주 지 역	벨기에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6개월 이상	○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합산 무사증 체류가능 일수가 90일임.
	벨라루스	○ 일반여권 (사증 필요)* ○ 도착사증: 사전에 공항 출입국사무소에 초청장 등 서류 제출 - 단, 러시아 출발 항공편을 이용하여 입국시 공항도착비자 발급불가 ○ 외교관·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 통과비자 발급(48시간 유효) - 공항(단, 러시아 출발 항공편으로 입국시 불가) 및 재외벨라루스공관에서 발급 ○ 필요서류 및 증명 - 여권 및 비자신청서(사진 부착) - 최종 목적지 국가 비자(단, 최종목적지 국가가 무비자 입국 가능한 경우 항공권 및 기차표 사본 등 여행증명 자료) - 여행자 보험증 사본	출국예정일+90일 이상	
	보스니아 · 헤르체고 비나*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 90일간 무사증 체류 가능	○ 통과사증 불요	체류 만료일(출국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여권 유효기간 필요	○ 체류경비 지불능력이 없거나 입국 목적이 불명확할 경우 입국 불허 ○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로 무사증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벨라루스 - 사전에 공항 출입국사무소에 사증 발급 구비서류 제출 (단기/장기 비자 모두 입국 최소 2일전(근무일 기준) 신청)
 - 위급한 환자 방문 등 긴급 비자 발급 (병원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번역본 등을 1일전(근무일 기준) 제출)
 - 유학 비자는 초청장 원본을 입국 2일전(근무일 기준)에 제출 (입국시 공항에 초청학교 관계자 대기 필수)
 - 사증 수수료 (단위: 유로화)

	단기 1회	단기 2회	복수 3개월	복수 1년
주한대사관 발급	60	90	120	150
벨라루스 발급 (민스크 공항)	180	270	360	450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입국후 48시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외국인서비스사무소(Service for Foreigners' Affairs)에 거소신고 필요(숙박업소 이용시 업주가 신고 대행)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여행동의서 필요(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가 반드시 동행)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구 주 지 역	불가리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Transit 비자 필요 없음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사증신청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 사증면제협정(90일) - 외교관·관용여권 ○ 무사증(90일) - 일반여권	○ 통과비자 불필요	6개월 이상	○ 쉥겐이행협약 미가입국임 에도 불구하고 동협약 체 류조항(180일 중 90일) 적용 ○ 여행증명서는 입국심사시 불인정(출국은 가능)
	산마리노	○ 무사증(90일)		3개월 이상	○ 이탈리아 영토내 국가로 이탈리아에 정상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심사없이 출입국 허용
	세르비아	○ 무사증(90일) -외교관, 관용, 일반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 입출국시 유로 10,000 이상 신고 의무
	스웨덴	○ 사증면제협정(90일)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 별도의 통과 비자(Transit Visa) 불필요 - 확정된 항공권 및 여권 소지	체류예정기간 + 3개월	○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 - 여행계획, 체재비, 귀국 항공권 소지 여부 등 확인
	스위스	○ 사증면제협정(90일)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 확정된 연결편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소지(필요시 최종목적지 사증) ○ 48시간 이내 출국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구 주 지 역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관용·일반여권(90일) - 선원수첩(15일) ※ 선원수첩의 경우 항공편 이용 입국시 불인정 	○ 유효 여권 및 항공권(경유국 또는 목적국) 소지	셴겐 출국예정일 이후 3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증명서는 스페인 또는 EU 거주증 소지자에 한해 인정 ○ 셴겐협정보다 양자 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입국심사관에 따라 셴겐협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 필요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관용·일반여권(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및 항공권 소지 ○ 통과여객 Zone에 체류 	출국 예정 일자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재국은 셴겐협정 우선 적용국 ○ 셴겐협정국가 중에서 슬로바키아를 최초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최장 90일 체류 가능 ○ 그러나, 1개의 셴겐협정국에서 최종 출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지난 180일 이내에서 총90일만 1개의 셴겐협정국가에서 타 셴겐 협정 국가들로의 무비자여행 허가 방식으로 체류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음. ○ 변경된 기준은 최초 입국일이 아니라 최종 출국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지난 180일 동안에 총 90일 체류를 허가하는 방식이므로, 여러 셴겐협정국가를 계속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최종 출국일을 미리 계산하여 출국일로부터 지난 180일간 셴겐협정 국가들에서 체류한 기간들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며 합산한 체류일수가 90일이 넘지 않아야 함

- *스페인 - 입국시 체류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지참 권고
- 여행 또는 사적 목적 : 숙소 예약증(개인 주택 체류시 관할 경찰서가 발급한 초청장), 패키지 여행 예약증, 현금 또는 체류경비 지불능력 증빙 서류(1일 64.53유로) 등
 - 비즈니스 또는 국제행사참석 목적 : 초청장, 사업관계증빙서류, 회의 참석자 입증 서류 등
 - 유학 등 학업 목적 : 교육기관 등록증 등
 - <http://www.interior.gob.es> 참조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구 주 지 역	슬로베니아	○ 쉥겐지역(180일 기간 내 90일)	○ 유효한 여권	○ 출국시 유효한 여권 - 예정 체류기간 +3개월 권고	
	아르메니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여권(90일) ○ 일반여권 - 사증 필요	○ 제3국행 예약항공권 및 유효한 여권 소지시 환승구역 내에서 48시간 이내 체류 가능	출국예정일자 +1일	○ 입국 예정 공항에서 입국 사증 발급 가능 - 수수료 : 체류기간별 차등 (21일 이하 미화 7달러, 120일 이하 미화 37달러) (미취학아동 면제) * 환율에 따라 수수료 변동 ○ 도착 전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사증(e-visa)발급 신청 가능 - http://mfa.am/eVisa
	아이슬란드*	○ 사증면제협정(180일 중 90일)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 특이조건 없음	체류예정기간 또는 사증만료일+3개월 이상	○ 단, 아래사항 유의

* - 쉥겐조약 당사국(영국, 아일랜드 등 일부 제외 대다수 유럽국가) 어디를 통해서든지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내에서 쉥겐조약 모든 당사국 체류일자를 합산하여 총 90일 범위 내에서만 무사증 체류 가능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구 주 지 역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관광 및 상용 목적 90일 이하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 관용, 일반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일랜드와 영국은 공동여행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영국 입국을 위한 아일랜드 경유시 아일랜드 입국에 준하여 입국심사 	6개월 이상	입국심사 시 왕복항공권, 초청장, 출장명령서, 체류지 상세정보, 체제비용입증 등 증빙서류 제출 요구
	아제르바이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 - '16.2.1.부터 입국공항 도착시증(30일 단수) 발급 (여권, 사진2매, 수수료(US\$50) 필요) (1회 30일 초과 체류시는 사증 발급 필요)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관에 문의 또는 www.mfa.gov.az 참조) ○ 외교관·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티켓을 소지, 도착 후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 ○ 통과사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항지 비자 및 항공권 소지시 발급 가능 - 기간은 5일 	체류예정기간 (최소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비자의 경우 아제르바이잔 정부 지정 여행사에 신청하여, e-visa로 발급 (여행사 명단은 아제르바이잔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fa.gov.az/?language=en&options=contest&id=749를 통해 확인)
	안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 입국(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 여권 및 항공권(경유국 또는 목적국) 소지 	○ 6개월 이상	
	알바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비자 불필요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는 입국심사시 불인정(출국은 가능)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구 주 지 역	영국*	○ 무사증 (최대 6개월) - 신분(학생/직장)증명서, 귀국 항공권, 숙소정보, 충분한 여행경비(현금과 여행자수표, <신용카드는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 여행계획 등 필히 지참 ※무허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입국심사관의 추가 확인 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요망	○ 48시간 이내 출국(출국항공권 및 목적지 국가 입국요건 구비) ○ 영국과 아일랜드는 공동여행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영국 경유 아일랜드로 여행시에는 영국 입국시와 동일한 입국심사	6개월 이상	영국은 입국심사시 서류심사 및 인터뷰를 까다롭게 실시하므로, 제출자료 준비 철저 요망
	에스토니아	○ 쉥겐협정 (180일 기간 내 90일) - 외교관·관용·일반 - 90일은 쉥겐국가 내 체류 누적일 - 기산 시점은 입출국 심사일 기준 과거 180일 기간 내 90일임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입국 및 출국 가능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여행자 보험증서 소지 필요
	오스트리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용여권(180일) - 일반여권(90일)	○ 쉥겐지역(180일 기간 내 90일) ○ 유효한 여권 ○ 주재국 체류와 귀국을 위한 충분한 재정수단 ○ 경우에 따라 출입국 심사시 여행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쉥겐지역) -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우즈베키 스탄	○ 사증면제 협정 - 외교관 여권(60일) ○ 관용여권은 일반여권과 동일하게 사증필요	○ 통과비자 사전 필요 ○ 공항 통과비자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전에 신청한 텔렉스번호가 필요 ○ 공항 환승구역내에는 비자없이 체류 가능	여권 만료일+3개월 이상	수수료 -단수:\$40~160 -복수:\$150~250 -통과:\$40~50

- *알바니아 - 1. 쉥겐이행협약 미체약국이나 동협약 체류조항(180일중 90일) 적용
2. 입국심사시 여행증명서 불인정
3. 공항입국시 입국세 : 10유로

*영국 - 상세사항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여행정보 참조(<http://gbr.mofat.go.kr/kor/eu/gbr/information/travel.index.jsp>)

* 유의사항

1. 무사증 입국 시 여권에 날인된 체류허가는 일반비자와 달리 영국출국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른 국가를 여행한 후 영국 재입국시 다시 엄격하게 입국심사를 함(즉, 기존 체류허가기간 만료 전이라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
2. 단기간 내에 무비자 입국을 여러 번 시도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이민당국이 편법적인 체류기간연장으로 간주하여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3. 쉥겐국가에서 무사증 체류기간(90일)을 거의 소진한 후에 영국(비쉥겐국가)을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있음
4. 미성년자(만18세 미만)가 보호자 없이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로우므로(입국거부되는 경우도 있음), 가급적 부모 동반 요망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구 주 지 역	우크라이나	○ 일반여권 - 무사증(90일)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공무여권(90일)		체류예정기간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내 90일(합산) 체류 가능
	이탈리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확정된 항공권과 여권 소지	3개월 이상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 (여행계획, 귀국항공권 소지 여부 등 확인)
	조지아	○ 무사증(1년)		3개월 이상	
	체코*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3개월 이상	
	카자흐스탄*	○ 외교관·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 일반여권 - 사증면제협정(30일) ※ 180일 이내 총 60일 초과 불가 ※ 근로·거주·유학 목적의 경우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 양국간 한시적 근로 협정(2014.9월서명) 발효 추진중

* - 입국 이후 호텔 등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집 등에 체류하는 경우, 집 주인이 방문객 도착 이후 근무일 3일 이내 외국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류예정
기간 및 장소 등을 신고(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자가 근무일 5일 이내 신고)

*카자흐스탄 - 무비자로 입국하는 모든 한국인은 입국후 5일 이내에 이민국에 거주등록을 하여야함.(호텔에서 외국인 거주 등록을 요청하면 대행함)
- (외교관-A1,A2, 관용-B1,B2, 비즈니스-D1, 사적-G1 의 단수비자 및 관광비자(F1)의 단수 및 복수 비자)이외의 비자소지자는 거주등록을 하
여야함
- 입국일로부터 5일내 출국하는 경우는 거주등록이 필요 없음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구 주 지 역	크로아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90일) ○ 일반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 범위내 90일간 무사증 체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사증 불요 	체류 만료일(출국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여권 유효기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경비 지불능력이 없거나 입국목적이 불 명확할 경우 입국불허 ○ 단수여권은 무사증 입국가능(여행증명서는 출국만 가능)
	키르기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여권(무사증 60일) ○ 외교관·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30일) 		체류예정기간+6개월 이상	관광 외 목적 방문은 주한공관 또는 주재국 공관에서 비자 발급 필요
	타지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90일) ○ 일반여권(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사증: 사전 공항 영사과에 초청장 등 접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사증 필요 ○ 공항여건상 환승구역이 없음 	체류예정기간+6개월 이상	외교관·관용여권 사증 면제협정 발효일 (2012.12.28)

- * - 입국후 48시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관서에 거소신고 필요(숙박업소 이용시 업주가 신고 대행)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여행동의서 필요
- *키르기즈 -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60일 입국 가능. 거주 등록 불필요. 단, 60일 이후 체류 연장 불가함.
 - 장기 체류 목적 입국 시에는 주한공관 또는 주재국 공관에서 도착비자를 발급받은 후, 비자청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연장 및 거주 등록을 해야 함. 공항 도착비자 수수료는 \$70임(1개월 한도, 1회)임
- *타지키스탄 - 타지키스탄 인근 주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등 타지키스탄대사관에 사증 신청 시 초청장 등 서류 제출 후 사증 발급(1주 이상 소요)
 - 타지키스탄내에서 초청장 작업을 할 경우 초청자가 초청장 등 서류를 외교부에 제출하면 외교부에서 심사하여 확인서 발급(2주 이상 소요)
 - 공항 영사과에 초청장,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등을 제출 시 입국사증 또는 단수사증 획득 가능
 - 모든 외국인은 근무일기준 3일 이상 체류 시 이민국 등에 거주등록을 해야 하며, 호텔 체류 시 호텔이 대행하여 등록
 - 공항 입국 시 작성한 입국신고서(반쪽)를 출국 시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 벌금을 납부한 후 출국 가
 - 기타사항은 타지키스탄 외교부 홈페이지(www.mfa.tj) 참조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구 주 지 역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관용·일반여권(90일) - 단,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하지 못함 		90일 이상 (*2015.1.1.부터는 유효한 체류허가기간 만료일보다 60일 이상 잔여유효 필요)	○ 사증발급신청 www.visa.gov.tr 에서만 접수 (16.1.5~) 및 유효한 건강보험 (16.1.5.부터 시작) 소지 필요
	투르크메니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30일) ※ 당지 주재 외교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중 면제 ○ 관용·일반여권(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사증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환승구역내 대기시에도 통과사증 필요 ○ 아쉬하바드 국제공항에서 사증 발급 (수수료 \$35) 	3개월 이상	

*터키 - 훼손여권은 무조건 입국 거부되며(여행증명서로 입국 불가), 여권사진의 모습이 실물과 상이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음
- 2012.2.1부로 외국인의 무사증 체류 기간이 종전의 90일로부터 '180일 기간 중 최장 90일'로 변경

*투르크메니스탄

1.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시 공항(수도 아쉬하바드 국제공항)에서 사증을 발급 받는 경우(기본 수수료)
 - 단수 사증 : 10일(\$85), 20일(\$95), 1개월(\$105)
 - ※ 사증 기본 수수료 외에 기타 수수료 17미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함
 - ※ 지방 소재 국제공항이나 육로, 해로 등을 통해 입국할 경우 사증수수료가 달라짐(보다 저렴함)
2.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이 사증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투르크메니스탄 이민청으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아 항공기 탑승시 부터 휴대해야 하며 공항에 도착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함
3.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민청에 체류 등록을 하여야 함(사진 4매 필요)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구 주 지 역	포르투갈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60일) - 선원수첩(15일)	○ 별도의 통과비자(transit visa) 필요 없음 ○ 확정된 항공권 및 여권 소지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폴란드*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여권 서명란에 친필 서명 필요
	프랑스*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핀란드	○ 쉥겐협정 (180일 기간 내 90일) - 외교관·관용·일반 - 90일은 쉥겐국가 내 체류 누적일 - 기산 시점은 입출국 심사일 기준 과거 180일 기간 내 90일임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입국 및 출국 가능	체류예정기간 + 3개월	
	헝가리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별도 통과비자(transit visa) 불요	○ 출국일기준+3개월 이상	○ 여권 서명란에 친필 서명 필요
	코소보	○ 무사증 90일	○ 유효한 여권 - 코소보를 통해 세르비아 출입국 불가능	○ 출국일 + 최소 3개월	

*폴란드 - 폴란드사증 신청시 :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여권잔여 유효기간 필요, 여권 서명란에 필히 서명

*프랑스 - 한·불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67.2.11) 및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89.9.22)에 의거, 일방 체약국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을 위해 타방국 영토에 입국시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중 동 지 역	레바논	○ 사증 필요 - 관광 목적의 경우, 30일 입국비자 공항 도착시 취득 가능	○ 확정된 티켓 및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 48시간 공항 대기 가능	6개월 이상	
	리비아	○ 사증 필요	○ 경유지행 항공권 및 관련 서류 필요 ○ 공항내 체류 ○ 24시간 이내 출국	6개월 이상	지역 민병대간 무력 충돌이 잦으므로, 신변 안전에 극 히 유의 필요
	모로코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 입국 서류 소지 ○ 동일 또는 연결항공편을 이용 당일 제3국으로 출국 ○ 공항 내 체류	6개월 이상	
	모리타니아	○ 사증 필요		6개월 이상	○ 도쿄, 파리, 라바트, 다카르 등 모리타니아대사관에서 사증취득 필요 ○ 모리타니아 누악쇼트, 누아디부를 제외한 전지 역은 철수권고지역으로 여 행하기 적합하지 않음
	바레인	○ 도착비자 발급 - 2주비자 : 수수료 25디나르(US\$66.81), 동 기간내 체류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2주 연장시 25디나르, 1개월 연장시 30디나르) - 72시간비자 : 수수료 15디나르(US\$40), 1주 연장시 30디나르, 1주이상 연장시 50디나르 - 환승비자 : 2디나르(US\$5.34) ○ 전자비자(E-Visa) : 입국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하는 비자 (https://www.evisa.gov.bh) - 2주비자 : 29디나르(US\$77.49, 이중 4디나르는 수수료), 2주 연장시 25디나르, 1개월 연장시 30디나르, 신청후 72시간 이내 발급, 발급후 30일 이내 사용해야 함 ○ 국경비자 : Causeway 다리를 통해 사우디 에서 입국하는 경우 - 2주비자 : 4디나르(입국, 출국시 각각 2디나르)	○ 확정된 항공권과 최종 도착지에서 필요한 서류 소지 ○ 공항 환승구역 내 체류	6개월 이상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중 동 지 역	사우디 아라비아	○사증 필요 -사증발급센터를 통해 사증신청 접수 https://www.vfstasheel.com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및 정부 공식 방문단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으로 직접 사증 신청	○확정된 항공권과 최종 도착지에서 필요한 서류(사증 등) 소지 ○공항 환승구역 내 체류	6개월 이상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 ○여행증명서는 출국시 에만 인정(입국시 불인정)
	시리아	○ 사증필요 (수수료 \$33) - 도착사증(관광)	○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편을 이용 ○ 환승구역내 체류, 4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우리 정부의 여행금지국 지정 (~2015.7.31까지)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여행 금지국 지정 재연장 예정
	아랍에미 리트*	○ 무사증(30일) -도착사증(30일) 및 1회 연장(30일) 가능 ※ 연장 수수료 620AED(170\$상당)		6개월 이상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로 입국 불가 원칙
	예멘	○ 사증필요 ① 주일본예멘대사관 또는 그 외 재외공관 에서 사증 발급, 수령 ② 예멘내 초청자를 통하여, 사증에 준하는 허가서를 예멘 이민청으로부터 사전에 발급받아 입국장에서 제시(사본)하고, 원본은 도착공항에서 초청자가 비자 창구에 제출 ※ 도착사증제도 폐지(2012년 말 이후)	○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공항 환승구역 내 체류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입국시는 불인정) ※ 외국인 납치 성행 등 치안 불안으로 여행금지국 지정 (~2015.7.31까지) ※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여행 금지국 지정 재연장 검토

*수단 - 모든 여권 소지자가 사증 필요(무비자 입국 불가능). 다만 사전에 주재국에서 발급한 엔트리 퍼밋(미화 50불 정도) 사본을 소지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엔트리 비자(미화 100불 정도) 발급 가능(엔트리 퍼밋 원본은 입국 전에 공항사무소에 별도로 제출해야 함)

*아랍에미리트 - 현지취업 등의 목적으로 아랍에미리트로 입국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현지지사를 통해 비자신청을 하고 입국허가증을 발급받기 전에 무사증입국을 시도할 경우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음.

- 따라서 사전 비자신청시는 반드시 고용허가증(Pink slip)을 지참하고 입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사증입국은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중 동 지 역	오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관용(90일) ○ 무사증(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으로 관광·통과 목적에 한하나, 실제로는 입국목적에 제한 없음. ※ 주재국 업무 체류를 위해서는 사전에 오만 내 스폰서를 통해 취업 사증 수속을 받은 후 입국하여야 함.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입국시는 공식적으로 불인정) ○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
	요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사증 가능(단수 30일) - 수수료: 40JD(약 \$56.5) - 복수 사증은 공항 발급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여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항공권 - 환승구역내 체류 또는 입국비자를 받아 시내관광 가능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입국시는 불인정)

- *요르단 - 사증은 주한요르단대사관에서 발급받거나, 공항 또는 국경에서 도착 사증(단수 30일) 발급
- 사증 수수료: 단수 78,300원, 2회 113,100원, 복수 217,500원 (주한요르단대사관 발급 기준)
 - 공항 또는 국경에서 도착 사증(30일)을 받아 입국 후 인근 경찰서에서 2개월 체류 연장 가능 (총 90일까지 체류 가능)
 - 3개월 이상 체류 연장 시 채혈 및 지문 등록
- 이스라엘과 접경한 킹 후세인 브릿지(알라비 보더)에서는 도착사증 발급이 불가능한 바 사전 사증 취득 요망.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중 동 지 역	이라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공항)사증 불허 - 상용,공무,외교 비자발급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필요) - 단수비자(3개월, \$40) - 복수비자(12개월 이내, \$100) ○ 비자체류기간에도 불구하고 1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는 입국후 10일 이내 지역 이민국에 입국 및 출국 예정일 신고 필수 (미신고 10일 초과 체류후 출국시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여 벌금 \$400 이상 납부 후 출국 가능하니 각별히 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여객 가능 - 공항 환승구역 내에서만 체류 	6개월 이상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필요
	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 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 협정(90일) ○ 일반 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이란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오는 것이 원칙 - 공항입국비자(도착사증)로도 입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목적 및 일정에 따라서 3일~30일 이내 유효기한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약 30유로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달러화 및 리알화 ※ 초청인의 초청장 또는 호텔 예약 등 관련 서류 준비가 바람직 - 체류기한 연장 가능 (30일 연장시 수수료 약 30만리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편 항공권 및 제3국 비자 소지 ○ 수수료 없음. ○ 공항 보세구역 내 최대 12시간 체류 가능 	6개월 이상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로는 출국만 허용(EXIT VISA 필요)하고, 입국은 불허함.

*이라크 - 여행금지(여권사용, 방문 및 체류 금지)국가임, 다만, 영주, 취재보도, 국가이익 및 기업활동 등의 경우 여권 사용, 방문 및 체류허가를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후 방문 가능(여권법 제26조: 여행금지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국가나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 체류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란 - 3~30일의 유효기간으로 발급하는 공항입국비자는 △이란초청자 또는 현지여행사에서 이란 외교부에 사전 통보 후 이민국에 신청시 30일 유효기간 이내의 원하는 체류 날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전 통보없이 방문시 체류 목적 및 일정에 따라 3~30일 유효기간중 임의의 날짜를 부여받게 됨.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중 동 지 역	이스라엘*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는 인정되지 않고, 단수여권 이상만 인정
	카타르*	○ 무사증 - 외교관·관용·일반(30일)		6개월 이상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입국불가
	쿠웨이트	○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 협정(90일) ○ 일반여권 - 도착사증 가능(90일) - 수수료: 3KD(약\$11), 단, 방문 및 여행 목적시(single entry) 수수료 면제 (15.6.1.~)	○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 공항 환승구역 내 체류	6개월 이상	

- *이스라엘 -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취업사증(B-1)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입국 후 공항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내무부가 발급하는 고용 허가서를 취득하게 됨.
-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에서 학생 비자를 취득해야 함
 - 입국 목적에 부합되는 서류 등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국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소지하기 바람.
- *카타르 - 비자 취득절차상 스폰서(현지 개인 또는 법인)가 있어야 비자취득이 가능한 비자와 무비자 입국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는 방문(visiting), 취업(working)비자 등이며, 후자는 상용(business), 관광(tourist)이 해당됨.
- 수속방법 : 1. 상용, 관광비자는 카타르측 무사증조치(2014.11)에 따라 30일 간 무비자 입국 가능(단, 출입국법규에는 왕복티켓 소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때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음).
 - 체류기간 1개월, 1회 연장가능
 - 2. 방문, 취업비자는 연고자가 카타르인 스폰서의 동의하에 카타르 이민국에 입국비자 신청 및 허가를 받아 입국예정자에게 송부(FAX 가능), 카타르 입국시 동 허가서를 소지해야 함.
 - 체류기간은 1개월에서 1년간, 연장도 가능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프 리 카 지 역	가나*	○ 사증 필요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없음 - 허가 신청시 대사관 공한 제출 요 ○ 입국 후 48시간 이내 출국해야 함 ○ 항공일정표 및 여행목적지의 사증 제시(사증이 필요한 국가 여행 시)	6개월 이상	○ 2014년 4월 이후 도착비 자 폐지
	가봉*	○ 사증 필요 (외교관.관용 여권은 사증 면제)	○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기를 이용,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감비아*	○ 사증 필요 - 도착 사증 가능	○ 통과비자 필요 (공항에서 발급, 공항체류시 불필요)	6개월 이상	○ 주세네갈감비아대사관에서 신청(아시아에 한국 관할 대사관 없음) ((+221) 33 820 11 98)
	기니*	○ 사증 필요 - 도착 사증 불가	○ 통과비자 필요 (공항에서 발급, 공항체류시 불필요)	6개월 이상	○ 주일본기니대사관 : 한국인 비자발급 관할 ((+81) 3-3770-4640, ambagui-tokyo@gol.com) ○ 주세네갈기니대사관 ((+221) 33 824 86 06)

*가봉 - 사증신청 구비서류 (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감비아 - 사증 수수료 : 단수 35,000 FCFA

- 환율 : US\$1 = 500 FCFA

- 예방접종 증명 휴대 불필요,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기니 - 사증수수료 : 단수 35,000 FCFA (주세네갈기니대사관 발급 기준)

- 기니 주재 초청자(혹은 영사협력원)에게 여권사본을 송부하여, 초청자가 이민국에서 피초청자의 사증을 발급. 피초청자는 사증사본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이민국으로부터 체류사증 획득

- 초청정 발급수수료 : 180,000 기니프랑, 사증수수료 : 3개월(280,000 기니프랑), 6개월(400,000 기니프랑) 1년(800,000 기니프랑)

- 환율 : US\$1 = 5,000기니프랑

-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접종증명 휴대), 그 외 추천예방접종 : 디프테리아, 파상풍, 척수회백질염, 결핵, 간염B, 뇌막염, 장티푸스

- 말라리아 예방약 : 클로로퀸 150mg을 주2회 복용, 본국으로 귀국 후 4주까지 계속 복용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프 리 카 지 역	기니비사우*	○ 사증 필요 - 도착사증 발급 가능	○ 통과비자 필요 (공항에서 발급, 공항체류시 불필요) → 연결항공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적을 경우 통과비자 발급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음	6개월 이상	○ 주세네갈기니비사우대 사관에서 신청 (아시 아에 한국 관할 대사 관 없음) ((+221) 33 824 59 22)
	나미비아*	○ 사증 필요	차항지로 여행을 증명하는 확정된 항공티켓 또는 초청장	6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Yellow card) 필요
	나이지리아	○ 사증 필요	○ 최종 목적지 확정 항공권 소지 ○ 최종 목적지 유효비자 소지 ○ 48시간 이내 연결 항공편을 이용, 제3국 출국 ○ 충분한 경비 소지 ○ 황열병 예방접종증서(증서 제시 요구하는 경우 있음)	6개월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무사증(30일)	통과사증 필요 없음	6개월 이상	황열병지역 국가 입출국 여행자에 대해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Yellow card) 필요

- *나미비아 - 사증신청 구비서류(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 *기니비사우 -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접종증명 휴대), 그 외 추천예방접종 : 디프테리아, 파상풍, 척수회백질염, 결핵, 간염B, 뇌막염, 장티푸스
- 사증수수료: 단수 45,000 FCFA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프 리 카 지 역	남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국 남수단대사관(북경, 나이로비, 캄팔라등)에서 비자 취득후 입국 또는, ○ 입국허가서 소지시 1개월 유효 도착사증 가능하나 입국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남수단내 대리인이 남수단 이민국을 사전에 접촉하여 허가서를 발부받아 입국자에게 미리 보내 주어야 함. ○ 단수비자 수수료 : \$100 입국허가서 수수료: \$45 복수비자 : \$125 (남수단 방문 유경험자에 한해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 티켓 소지 시 공항 내 체류 후 환승 가능. ○ 17:00PM 이후 항공편은 없으며, 17:00PM 이후 공항 내 체류는 불가능 	6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Yellow card) 필요
	니제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 - 도착사증 불가능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무사증시 통과여객 가능하나, 공항 밖으로는 나갈 수 없음	6개월 이상	○ 도착사증발급 불가
	라이베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관용·일반여권(90일) - 선원수첩(15일) 		6개월 이상	
	레소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60일)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 통과사증 필요 없음	6개월 이상	

*남수단 -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공항에서 도착비자 가능,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증 필요**. 다만 사전에 주재국에서 발급한 엔트리 퍼밋 (미화 50불 정도) 사본을 소지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엔트리 비자(미화 100불 정도) 발급 가능

*니제르 - 경유국(중국/일본) 주재 니제르 공관에 사증 발급 신청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프 리 카 지 역	르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 ○ 도착비자(30일) - 단수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르완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입국 가능 - 단수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완다 도착 후 72시간 내 제 3국으로 출국하는 연결 항공권 소지 ○ 르완다대사관 또는 영사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완다 이민국 홈페이지 (www.migration.gov.kr) ○ 주한 르완다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13 수영빌딩 5F - 비자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11시 30분, 오후 1시 - 4시 30분
	마다가스카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 ○ 공항 도착시 1개월 내 관광비자 취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까지는 무료이지만 1개월 경과 될 경우 \$60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시간 기준 연결 항공권 소지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명예영사 사무실에서 비자 취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 김윤식 명예영사 사무실 : 02 752 6530 ○ 황열병지역 국가 입출국 여행자에 대해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말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일본말라위대사관 또는 주아프리카지역 말라위 대사관에 사증 신청(미화 100불) ○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20~30미불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연장 시 : 5,000과차 - 60일 연장 시 : 10,000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 항공권 소지 ○ 공항 내에서 최대 24시간 체류 가능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위 이민국 발급 공문 (VISA Letter)을 소지했을 경우 도착비자 가능(공항에서 70미불 지불) - VISA Letter는 말라위 현지 거주자 (영사협력원 또는 한인동포, 국내 비자 대행사, 여행사)를 통해 말라위 이민국에 신청하여 도착비자발급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프 리 카 지 역	말리*	○ 해당 국가에 말리대사관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도착 사증 가능 - 사증 필요	○ BAMAKO-SENOU 공항에 체류하거나, 시간이 충분히 많은 경우, 공항 경찰이 통과비자 발급	6개월 이상	○주세네갈말리대사관 ((+221) 33 825 17 16) ○주일본말리대사관 http://www.ambamali.jp/visa-issuance.php ((+81) 3-5447-6881, info@ambamali-jp.org)
	모리셔스*	○ 무사증 입국(16일) ○ 16일 초과 체류시 사증 필요 - 연장 가능(3개월까지, 수수료 없음)	○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 하는 서류소지	6개월 이상	
	모잠비크	○ 사전 입국사증 취득은 필수임. - 주일본 주재 모잠비크대사관 (한국경임)에서 사증 발급 담당. (http://www.embamoc.jp) ○ 다만, 한시적이고 임시로 공항 또는 국경 도착 시 도착사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나 출입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도착사증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어 사전 입국 사증 취득을 권고함. - 도착사증(30일 단수사증, 수 수수료 \$78) 취득을 위한 구비 서류: 모잠비크 거주자 또는 주재 회사가 발행한 유효한 초청장, 숙박지 주소 및 연락처 정보 ※ 공항 도착, 출입국 심사관과 도착사증 발급 인터뷰시 초청장, 숙박지 주소, 연락처 정보, 방문	○ 공항 밖으로 출국하지 않는 한 통과사증 불필요. 공항 밖으로 나갈 경우 경유비자(F)를 받아야 함. ○ 단, 목적지 국가의 유효한 입국 사증 및 연결편 항공권을 소지 하여야 하며, 공항 내에서 다음편 항공기 탑승시까지의 최소한의 시간만 체류 가능.	6개월 이상	○ 2013.10 공관 창설 이래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사증 면제, 모잠비크 명예영사를 통한 서울에서의 사증 발급 추진중. ○ 도착사증 발급시 현지 금품 요구에 주의요망 * 우리 국민이 인근국(스와질랜드) 에서 사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하는 경우에도 주일모잠비크대사 관에서 사증을 받지 않았다면서 입국을 거부하고 과다한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음.

	<p>목적(을) 요구하는 바, 사전 준비 바람.</p> <p>○ 도착사증 취득·입국후 이민국에서 연장이 가능함.</p> <p>- 도착사증은 단수로서, 30일 이전 출국 시 무효가 되며, 입국사증을 재취득해야 함. 도착 사증은 1회 추가연장(30일) 가능함.</p>			
베냉	<p>1.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p> <p>2. 일반여권 : 사증 필요</p> <p>- 주일본 또는 아프리카내 베냉 대사관에서 사증발급</p> <p>-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p>	<p>1.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확정된 티켓을 소지</p> <p>2. 24시간이내에 제3국으로 출국</p> <p>3. 공항내에서 체류</p>	1개월 이상	
보츠와나	○ 무사증(90일)	○ 통과사증 필요 없음	6개월 이상	

*말리 - 사증수수료 : 단수 25,000 FCFA

-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접종증명 휴대), 그 외 추천예방접종 : 디프테리아, 파상풍, 척수회백질염, 결핵, 간염B, 뇌막염, 장티프스

- 말라리아 예방약 : 클로로킨 150mg을 주2회 복용, 본국으로 귀국 후 4주까지 계속 복용

*베냉 - 일반여권 소지자 도착사증 발급요건 : △베냉에 거주중인 자의 초청을 받은 경우 이민국에 사전입국 승인요청, △베냉내 체류지역, 기간 및 목적(필요시 관련서류)이 분명하여야 함. △베냉내 거주 초청인이 없거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강제 추방가능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프 리 카 지 역	부룬디	○ 사증 필요 ○ 도착사증 발급 중지 (2015.10.15. 이후)	○ 연결 항공권 소지	1개월 이상	○ 주중국부룬디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경임
	부르키나 파소*	○ 사증 필요 - 도착사증 가능 - 수수료: 94,000CFA(단수,\$100) 122,000 CFA(복수,\$250)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 무사증시 통과여객 가능하나, 공항 밖으로는 나갈 수 없음	6개월 이상	○ 도착사증발급 - 사진 2매 - 사증발급신청서 - 수수료 - 황열병예방접종카드
	세네갈*	○ 무사증		3개월 이상	< 필수 준비 서류 > ① 왕복 항공권, 제3국 향발 항공권 등 복귀 확인을 위한 서류 (동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② 황열병 접종 증명서

*부르키나파소 - 경유국(대만/일본) 주재 부르키나파소 공관에 사증 발급 신청

*세네갈 -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접종증명 휴대), 그 외 추천예방접종 : 디프테리아, 파상풍, 척수회백질염, 결핵, 간염B, 뇌막염, 장티푸스
- 말라리아 예방약 : 클로로킨 150mg을 주2회 복용, 본국으로 귀국 후 4주까지 계속 복용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프 리 카 지 역	상투메 프린시페*	○ 사증필요	○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음 ○ 입국 후 최단시간 내 출국해야 함 ○ 항공일정표 및 여행목적지의 사증 제시(사증이 필요한 국가 여행시)	6개월 이상	
	세이셸	○ 무사증 입국(30일) ○ 3개월 연장가능(최대 12개월 연장) -3개월 초과 체류시 수수료 : Rs 5,000루피 (약 \$415 상당)	○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	6개월 이상	
	스와질랜드	○ 무사증(60일)	○ 통과사증 필요없음	3개월 이상	
	소말리아*	○ 사증 필요 - 수수료 : \$50(3개월, 단수)	○ 경유시 최종 도착지를 증명하는 항공 티켓 및 사증 제시	6개월 이상	
	수단*	○ 사증 필요	○ 확정된 티켓 ○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편을 이용 하여 제3국으로 출국 ○ 공항 환승구역 내 체류	6개월 이상	○ 여권은 경찰이 보관하며 출발 시 돌려줌 ○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로 입국 불가
	시에라리온	○ 사증 필요	○ 24시간 이내 동일 또는 연결항공 기를 이용, 제3국으로 출국 ○ 공항 환승구역 내 체류	3개월 이상	

*상투메프린시페 - 사증신청 방법은 TAIWAN 소재 대사관에 신청하거나 online 신청(www.smf.st/virtualvisa) 가능

*소말리아 - 1991년 이후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있어 여행시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는 요구하지 않으나 예방 접종 권장

*수단 - 모든 여권 소지자가 사증 필요(무비자 입국 불가능). 다만 사전에 주재국에서 발급한 엔트리 퍼밋(미화 50불 정도) 사본을 소지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엔트리 비자(미화 100불 정도) 발급 가능(엔트리 퍼밋 원본은 입국 전에 공항사무소에 별도로 제출해야 함).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프 리 카 지 역	알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90일) ○ 일반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내 연결되는 항공기를 이용, 제3국으로 출국 ○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 및 왕복 또는 연결편 항공권 소지 ○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소지인 서명 필수 (누락시 위조여권으로 오인) ○ 출국시 외환반출에 대한 규제 엄격 적용(입국당시 향후 출국시를 대비하여 외환반입신고를 꼭 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시에는 입국 당시 신고했던 외환만 반출할 수 있으며, 입국 당시 신고했던 외환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알제리국내에서 환전했던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앙골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30일) ○ 일반여권(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nsport 비자 필요(15일 비자) 	6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Yellow card) 필요
	에리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에리트레아 경유 항공은 없음 ○ 외국인 입국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 견지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사례 다수

* 앙골라 - 사증신청 구비서류(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 에리트레아 - 모든 여권 소지자가 사증 필요(무비자 입국 불가능).

- 원칙적으로 주수단 에리트레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단순 관광객의 경우 비자발급을 거절하고 있음.

- 황열병 발병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 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프 리 카 지 역	우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사증 가능(1~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일반여권은 \$50, 외교관·관용여권은 면제 - 도착사증은 관공용이며 단수임 ○ 이민국에서 체류목적에 따라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 티켓 소지, 24시간내 제3국.으로 출국시 공항내 체류 ○ 24시간내 연결 항공편이 없는 경우, 항공사 주선으로 공항 밖 호텔 체류 후 다음 항공편으로 출국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Yellow card) 필요
	에티오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 - 도착사증가능(최대90일) - 수수료 : \$50, USD현금 납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확정 티켓 소지, 24시간내 제3국으로 출국시 공항내 체류 2. 24시간내 연결 항공편이 없는 경우, 항공사 주선으로 공항 밖 호텔 체류 후 다음 항공편으로 출국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이외 상용(비즈니스, 취재 등)입국시 서울 주재 주한에티오피아대사관 등에서 비자 받은 후 입국해야 함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 관용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면제협정(90일) ○ 일반 여권(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사증가능(30일, 수수료:\$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티켓 소지 ○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증명서는 출국 시에만 인정되며, 입국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음 ○ 2012년 12월부터 입출국시 미화 1만불 이상 소지 금지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프 리 카 지 역	잠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사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수: 50미불 - 일반 3개월, 상무 1개월 체류기간 ○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한 사증 유효기간 내 무료 연장 ○ Univisa 시행(15.6.4) : 짐바브웨-잠비아간 통합관광사증 50미불, 30일간, 양국 간 자유 왕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 항공권 소지 ○ 공항 내에서 최대 24시간 체류 가능 	6개월 이상	주한잠비아대사관 개설 (2014.9)
	적도기니*	○ 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기를 이용 출국 ○ 적도기니 공항이나 항구의 국제 통행 구역을 통해 통과하거나 적도기니 영토를 횡단하는 것을 허용 	6개월 이상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공항내 체류 ○ 예방접종(황열) 증명서 	6개월 이상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지부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 -도착사증가능(30일) -수수료: \$9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확정 티켓 소지, 짧은 시간(2~3시간 등)은 공항내 체류 2. 장시간 대기필요시에는 공항외부 호텔에 체류후 다음 항공편으로 출발 	6개월 이상	
	짐바브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사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수: 30미불, 30일 ○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무료): 30일(일반), 7일(상무) ○ Univisa 시행(15.6.4) : 짐바브웨-잠비아간 통합관광사증 50미불, 30일간, 양국 간 자유 왕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 항공권 소지 ○ 공항 내에서만 최대 3일까지 체류 가능 	1개월 이상	주한짐바브웨명예영사관에서 입국 비자 발급 가능

*적도기니 - 사증신청 구비서류 :

여권, 비자발급신청서(사진1매), 적도기니 외교부 공한, 적도기니주재 한국기업 등의 초청장, 수수료RMB 2,000위안(USD약340)
상세내용 블로그(<http://blog.naver.com/sompat/220206462665>)참조

- 사증발급 지역 : 대한민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주중국 적도기니 대사관을 제외한 다른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가봉, 프랑스, 스페인, 미국에서 비자발급 사례 있음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 프 리 카 지 역	차드	○ 사증 필요	○ 경유 항공권, 도착국가의 입국비자 등을 소지 ○ 정해진 항공일정에 따라 차항지로 출국 ○ 예방접종(황열) 증명서	3개월 이상	주한차드명예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카메룬	○ 사증 필요 - 도착사증(수수료: \$ 100) - 대사관 및 영사관이 없는 국가에서 출국한 여행자만 도착사증 가능	○ 확정된 티켓 소지 또는 여행 관련 증명 서류 ○ 도착지 비자 또는 도착지 입국서류 소지 ○ 예방접종(황열) 증명서	6개월 이상	주한카메룬명예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카보베르데*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 무사증입국 가능(90일) ○ 사증 필요(일반여권 소지자) - 도착사증 발급 가능		6개월 이상	○ 주세네갈카보베르데대사관 신청 (아시아에 한국 관할 대사관 없음) ((+221) 33 860 85 87)
	케냐*	○ 사증 필요(수수료 \$50)	○ 경유시 공항 환승구역 내 체류	6개월 이상	○ 단수방문비자 신청을 e-visa로 전환 ○ 2015.9.1.자로 공항만 발급 도착단수 비자 및 경유비자 업무 중지하였으 나 e-visa 사용 불만 제기로 한시적 으로 주한대사관, 공항만 도착비자 발급 시행중
	코모로*	○ 사증 필요(수수료 \$50) ○ 도착 사증(24시간)	○ 경유시 transit 비자 신청(비자신청서 작성, 수수료 \$20, 다른 서류 필요치 않음.)	6개월 이상	
	코트디부 아르*	○ 사증 필요 - 일반적 도착사증 불가능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 확정된 티켓 및 입국서류를 소지 ○ 계속 동일 항공기 또는 첫 연결 항공기를 이용해 제3국으로 출국할 경우 최소한만 가능	6개월 이상	출발전 이민국에 사증신청서 등 서류 를 먼저 제출하면, 공항 도착시 도착사 증 발급 가능(도착사증 승인/불가 여부 를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공항도착시 불가될 위험이 있음)
튀니지	○ 사증면제협정(30일)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 통과사증 필요 없음	6개월 이상	통상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허용, 외국 여행객 출국시 출국세 납부(30TND) 요 함. 출국시 외환반출(3,000미불 이상)에 대한 규제 있음	

* 카보베르데 - 비자 신청 시 여행목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 첨부 필요, 사증수수료 : 단수 약 30,000FCFA

* - 주한 케냐대사관(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43-36, tel:02-3785-2903)에서 3개월 유효 방문비자 발급가능(비자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 항공권 또는 예약증명서, 수수료)
(사업 목적 방문시 반드시 상용비자를 신청할 것)

* 코모로 - 입국시 공항에서 24시간 무료비자 받을 수 있으나 다음날 Morono에 있는 이민국에서 비자 변경 필요

- 수수료는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케냐 코모로명예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 신청서(여권사진1매), 수수료 \$50 필요

* 코트디부아르 - 사증신청 구비서류(여권용 증명사진 3장, 유효한 여권 및 첫페이지 사본, 사증발급신청서 3장, 항공 왕복 예약권, 황열병 예방접종카드 사본, 출장 명령서/호텔예약확인서/방문초대장원본 등)

주 별	국 가 명	사 증 필 요 여 부	통 과 여 객(TWOV)의 조 건	여 권 잔 여 유 효 기 간	비 고
아 프 리 카 지 역	콩고공화국*	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항공권과 최종목적지 비자 소지 ○ 연결항공편 이용자는 공항 내 통과여객 대기장소에만 머물러야함. - 동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콩고공화국대사관에서 일반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증(체류기간: 1개월, 수수료: 약 9만원) ○ 입국심사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소지 필수
	콩고민주공화국*	사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항공권과 최종목적지 비자 소지 ○ 연결항공편 이용자는 공항 내 통과여객 대기장소에만 머물러야함. - 동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여행자의 합법적 거주지 내 DR콩고대사관에서 일반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증(체류기간: 1개월, 수수료: 12만원 / 체류기간:3개월, 수수료: 35만원) ○ 입국심사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소지 필수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Yellow card)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티켓 소지 또는 여행 관련 증명 서류 ○ 도착지 비자 또는 도착지 입국서류 소지 ○ 체류기간 내 충분한 경비 소지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증(체류기간 : 3개월, 사증수수료 7만원) ○ 도착사증(체류기간 : 3개월, 사증수수료 \$50)
	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필요 - 주일본토고대사관 또는 아프리카 내 토고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사진 3매를 지참하여 통과 비자를 받은 경우,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음(이민국 직원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1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사증, 통과사증 - 수수료 \$20, (CFA 10,000)

- * 콩고공화국 - 사증신청 구비서류 : 사증신청서, 초청장(콩고공화국 영토안보국 DGST(Direction Generale de la Securite du Territoire에서 인증한 초청장) 및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등 여행목적 소명서류,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사진 2장, 수수료 10,000엔(약 9만원)
 - 사증 발급처 : 한국의 경우, 주일본콩고공화국대사관(81-36-427-7858)에서 경임
- * 콩고민주공화국 - DR콩고 외교사절이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 출발 전 비자발급 필수 (예를 들어, 거주지가 아닌 여행국 또는 일시체류중인 국가 내 소재한 DR콩고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입국 시 비자취소 및 입국거부됨)
 - DR콩고 외교사절이 주재하지 않는 제3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체류증소지자) 경우 : 주변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DR콩고대사관에서 일반사증을 발급받거나, 주재국 DGM을 통해 도착비자(visa volant : 사전신청 필수, 최장 7일 체류가능, 수수료 40\$ 단, DR콩고에 거주중인 지인이(현지인 혹은 외국인) 초청장을 작성해 신청해야함)로 입국가능
 - 사증신청 구비서류 : 사증신청서, 초청장(시청 공증실(Service de notariat에서 인증한 초청장) 및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등 여행목적 소명서류, 재능능력증명서류(은행잔고확인서 등),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사진 2장, 수수료
- * 토고 - 도착사증 발급조건 : △토고에 거주중인 자의 초청을 받은 경우 토고 이민국에 사전 입국 승인 요청, △토고내 체류지역, 기간 및 목적(필요시 관련서류)이 분명하여야 함. 토고 내 거주 초청인이 없거나 방문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강제 추방가능 △ 토고에 1주일 이상 체류시 이민국에 신고해야 1달 체류 도장을 받을 수 있음(초기 입국시 1주일 체류 허가) △ 8일가량 체류시, 이민국 도장 없으면 출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 황열병 카드 없을 시 공항에서 바로 접종 가능 하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함